

충청북도재해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1998. 9. 19

제안자 : 관광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1998. 9. 11자로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계장명칭이 담당으로 변경되었는바,본개정 조례안상 계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바로잡고자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①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7조 제5항중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을 자연재해 업무담당으로 함 (안 제6호 제7조)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

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7조 제5항중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을 자연재해업무담당으로 한다.